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2/17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주관부서 : 경영기획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지침은 포스코리튬솔루션 주식회사(이하 "회사")의 공정거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당사의 모든 임직원 및 공정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활동에 적용되며,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정거래 자율준수"는 임직원이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하 "자율준수"라 한다).
-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이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예규의 경쟁법을 의미하며 공정거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보호법률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령을 말한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이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교육, 감독 등 회사 내부의 준법시스템과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와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을 말한다(이하 "CP"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란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자율준수협의회"란 자율준수관리자를 자문하고 담당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 감독하기 위하여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
- ⑥ "담당본부"란 자율준수협의회 위원 별로 자체점검을 실시, 감독하는 본부를 말한다.
- ⑦ "CP 주관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아래에서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3/17

제 2 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 1 절 자율준수관리자

제 4 조(자율준수관리자의 임명과 해임)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 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행위에 관여되어 있어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해임할 수 있으며 임직원과 사내외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 ④ 자율준수관리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 조 제 3 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 CP 주관부서장이 자율준수관리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까지 또는 이사회 의결로 새로 선임될 때까지 업무를 대행한다.

제 5 조(자율준수관리자의 독립성 보장)

- ①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②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본 조 제 3 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 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 ④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⑤ 회사는 본 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제 6 조(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CP 의 운영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4/17

2. CP와 관련된 계획 수립
3. CP 실태에 대한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4. 점검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등 후속 조치
5.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업무에 대한 임직원 교육
7. CP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8. CP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
9. 공정거래위원회 등 법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협조 및 지원
10.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7 조(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CP 준수실태에 대한 점검,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 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 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

제 2 절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조직

제 8 조(조직의 구성)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주관부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 ① CP 주관부서의 직원은 점검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지식 및 경험을 갖춘 자로 보임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전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CP 주관부서 직원으로 보임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3. 기타 자율준수관리자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 ③ CP 주관부서의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에 의한다.
- ④ CP 주관부서의 직원은 법령위반 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분상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5/17

제 9 조(CP 주관부서) CP 주관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보좌
2.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시행
3. CP 운영상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효과성 평가
4.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연관된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5.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7.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8. 공정거래 관련 반기 1회 모니터링 및 점검
9. 공정거래 모니터링 프로세스 및 시스템 개발

제 3 절 자율준수협의회 구성 및 역할

제 10 조(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 및 선임)

-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로 구성한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위원장인 자율준수관리자와 공정거래와 관련된 부서의 선임부서장으로 구성한다.
- ③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사업본부 및 지원부서의 자율준수 활동을 위해 해당본부에 2년이상 근무한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단, 본 자율준수협의회의 구성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④ CP 주관부서장은 간사로서 자율준수협의회 실무운영을 총괄한다.

제 11 조(자율준수협의회의 운영 및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는 반기 단위로 1회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2인 이상의 구성원 요구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1.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재재 등과 관련되는 중요사항의 심의 및 필요사항 권고, 자문
 2. 자율준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부서간의 업무 조정
 3. 위원별 담당부분의 법 위반행위 사전예방을 위한 자체점검 실시 및 감독, 그 결과를 자율준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6/17

관리자에게 보고

4. 각 위원별 담당본부의 자율점검에 대한 감독
5. 기타 자율준수관리자의 업무수행 자문

제 12 조(자율준수협의회 위원과 공정거래 실천리더의 역할)

- ①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지원
 2. 공정거래 실천리더를 지휘감독하여 소속본부 CP 운영
 3. 본부의 CP 교육 참여 독려로 소속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사전 법 위반 예방
 4.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및 CP 운영 개선사항의 발굴
- ② 공정거래 실천리더는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 활동을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협의회 위원의 자율준수활동 지원
 2.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상담 및 자문
 3.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준수 점검 및 그 결과를 CP 주관부서에 통보
 4. 본부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시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에 통보

제 4 절 임직원

제 13 조(임직원의 의무)

-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CP 주관부서에 자문을 요청하거나 협의하여야 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CP 주관부서에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7/17

제 5 절 대표이사

제 14 조(대표이사의 역할)

-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효과적인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회사의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의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보고받을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절차 개선 등을 지시하고 필요시 관련 임직원에게 대한 제재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제 3 장 CP의 운영

제 1 절 자율준수 의지선언

제 15 조(선언목적) 대표이사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풍토를 조성하고 CP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하여 자율준수 의지를 선언하여야 한다.

제 16 조(선언방법) 대표이사의 자율준수 의지는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 공지되어야 한다.

제 2 절 CP의 운영

제 17 조(자율준수편람)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들이 실제 업무수행의 지침서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 ②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규정 등의 변경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에 반영하고 이를 임직원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을 임직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개정 검토(매월) 및 개정(반기 1 회)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 18 조(교육)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8/17

- ① CP 주관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구매, 견적, 사업관리, 재무부서 교육
 2. 공무, 공사, 관리, 안전 등 현장 관리자 및 담당자 교육
 3.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교육
 4. 교육 미 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5.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마인드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6. 대면, 온라인, 동영상, 업무시스템 게시 및 팝업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
- ② CP 주관부서는 교육별 의무 수강부서를 선정하여 이를 공지할 수 있으며 교육 후 수강현황을 부서장에게 통보토록 한다
- ③ CP 주관부서로부터 교육 대상으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을 미 이수한 임직원 중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동 지침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에서 정한 기준보다 가중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④ CP 주관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CP 주관부서는 교육 후 피교육자의 이해도, 만족도, V.O.C, 참석률 등의 파악을 통해 교육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말에 종합적인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한다.
- ⑥ 교육을 하는 사외강사의 자격은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서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으로 하며, 사내강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한정한다.
 1. 구매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경력 2년 이상
 2. CP 주관부서 업무경력 1년 이상 또는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2급 이상 자격 소지
 3. 사외 공정거래 전문교육기관 강의 수료 1회 이상

제 19 조(문서의 관리)

- ①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관련된 업무 수행 시 발생된 모든 문서는 3년 간 보관되어야 한다.
- ② 본 규정 외의 사항은 사내 문서관리지침에 따른다.

제 20 조(위험성평가) CP 주관부서는 부서별 업무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를 평가하고, 적합한 통제를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① 위험성평가는 분기 1회 실시하고, 리스크등급은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한다.
리스크등급이 '중' 등급 이상의 경우 적절한 통제방안을 강구하여 해당 리스크를 회피, 경감 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9/17

는 제거한다.

제 21 조(모니터링 및 점검)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등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과 관련한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하여 법 위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① CP 주관부서는 리스크가 높거나 자율점검이 부진한 본부 및 그룹에 대해 상시 공정거래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 ② 수감부서는 CP 주관부서의 모니터링 및 점검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 ③ CP 주관부서는 모니터링 및 점검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한 후 경영층에 보고하고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절차개선 등을 취할 수 있다.
- ④ CP 주관부서 직원은 모니터링 및 점검을 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점검하여야 한다.
 2.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객관적 점검 기준에 따라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3. 직무상 지득한 회사의 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할 수 없다.
 4. 모니터링 및 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점검대상자 또는 부서의 업무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점검대상자의 동의를 없는 한 근무 시간 내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모니터링 및 점검과정에서 권위적·고압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며, 우수사례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6. 점검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 22 조(제보시스템의 운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실 또는 잠재적 위반가능성을 발견할 경우 이를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점검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제보시스템은 기명제보 뿐만 아니라 익명제보도 가능하도록 운영한다. 익명제보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한다.
-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제 3 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제보자가 제보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10/17

제 23 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상황을 대내외에 자진 공시하여야 한다.

제 24 조(운영평가)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반기 1회 평가하여 경영층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CP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② 운영평가에는 주요 법령의 비준수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운영평가자는 CP 주관부서에서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한 또는 컴플라이언스경영전문가(CCP) 2급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 자로 한정하고 필요 시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3 절 공정거래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및 포상

제 25 조(제재조치 요구)

- ① 본 운영지침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임직원에 대해서는 위반사실을 인지한 부서 책임자가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로 즉시 알려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는 회사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위반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 26 조(제재의 원칙과 절차)

- ①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주의 또는 경고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 또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승인을 얻은 CP 주관부서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사항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임직원 또는 조직에 대해 인사위원회 회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는 제재조치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등 CP 주관부서의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수준이 가중될 수 있다.
- ④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인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11/17

제 27 조(임직원 포상)

-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를 성실하게 실천하였다고 평가된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인사업무 담당부서에 포상을 추천 할 수 있다.
 1. CP 점검 우수 조직
 2. 자율준수협의회 우수 위원 및 공정거래 실천리더
- ② 포상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첨의 공정거래 우수 현장 및 실천리더 포상기준을 따르며,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제 28 조(기타)

- ① 자율준수관리자와 CP 전담부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 내부 절차에 의거 CP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③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은 수시 개정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 등이 개정되지 않은 경우 개정하지 않는다.

별첨 1.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

별첨 1. 하도급법 위반 제재기준

[개인책임 양정 기준]

조사주체	양정대상 건	위반행위 유형별 평가점수	양정	비고	
공정위	신고접수/ 직권조사	50 점 초과	징계	- 공정위 처분 공문 도달 시 양정	
		50 점 이하	사장 경고		
	공정위/ 조정원 접수 후 합의	80 점 초과	징계	- 공정위 조사과정 중 발견된 명백한 법위반(서면,대금,부당특약 등)에 대해서만 기준에 따라 양정 (단, 공정위 접수 전 코칭에 대해서는 정상참 작)	
		70 점 초과	사장 경고		
		50 점 초과	본부장 경고		
		50 점 이하	주의		
	경영기획실	경영기획실 점검	80 점 초과	징계	- 민원을 통한 하도급 분쟁 접수 후 점검 (당사, 포스코, 언론, 국회 민원 접수) - 주기적인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점검 우선 대상 현장 선정 * 작업지시서 발급이 저조한 현장 * 계약변경이 많거나, 계약종료 후 잔액이 있는 하도급계약이 많은 현장 * 추가공사 이상징후 빈발 현장 등
			70 점 초과	사장 경고	
50 점 초과			실장 경고		
50 점 이하			주의		
현장요청에 따른 점검		70 점 초과	실장 경고	- 하도급분쟁 예상 업체와의 법위반 Risk 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코칭 요청 시 (단, 코칭 후 30 일 이내 <u>자진시정 완료시</u> <u>면책</u>)	

[관리책임 양정 기준]

구 분	내 용
관리책임 정의	부하직원의 업무과실이 발생할 경우 직책보임자는 관리, 감독 노력 정도에 따라 인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판단기준	- 법 위반행위가 당해 직책보임자의 관리영역 내에서 발생해야 함 - 해당업무에 대해 직책보임자로서의 주의의무가 결여되어야 함. - 법 위반행위가 직책보임자의 지시에 의해 발생한 경우는 해당 직책보임자 에게 관리책임이 아닌 직접책임에 의한 인사조치 의뢰
적용범위	업무과실자의 직상급자를 포함하여 인사조치 의뢰
양정범위	업무과실자 인사처분 대비 동등 혹은 1 단계 낮은 수준으로 인사조치 의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지침	문서번호	개정번호	페이지
		PLS2307-01	2	13/17

[양정 감경 및 가중사항]

구 분	내 용
감경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 위반의 자발적 인정 및 반성 - 신입(전입)사원 혹은 해당업무 미숙련자의 업무 미숙 - 자율준수노력, 외부 법률 상담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으나 예상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위반한 경우 - 조사 전 자율적으로 법 위반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한 경우 - 기타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등 점검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
가중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 법 위반 행위가 상습적으로 반복 발생하는 경우 - 불성실 조사대응 및 허위진술 - 기타 고의적, 악의적 행위로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점검인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가중이 필요한 경우